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. 10. 15 선고 2023나3323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. 10. 15 선고 2023나33238 판결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. 11. 9 선고 2021가단3117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선

변론종결 2024. 9. 10.

판결선고 2024. 10. 15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. 11. 9. 선고 2021가단31176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피기준 사이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. 7. 30.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피기준에게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9. 7. 30. 접수 제27529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(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B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·확정되었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상준, 판사 최경은, 판사 임세영

별지